

## 해양 지명의 전문성과 표준화에 관한 기초연구

### A Basic Study on Speciality and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in Korea

최윤수\*·한길수\*\*·임영태\*\*\*

Choi, Yun Soo · Han, Kil Soo · Lim, Young Tae

#### 要　　旨

해양지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포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퇴·해저협곡 해구 등 해저지형의 이름이다. 해양지명은 육상지명(이하 “지명”이라 함)과 달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면 하에 있는 지형 지물로 선박의 항해 안전과 직결되어 인명과 재산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해양지명은 표준화 절차나 규정이 없어 관련기관, 연구기관, 관련학계 등에서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의로 명명하여 사용함에 따라 해양지명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지명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Marine geographical names refer to the names for the geographical forms in nature such as oceans, straits, bays, inlets, and channels as well as the various undersea forms including reefs and trenches. Marine geographical forms, lying under the sea, are different from those in land and are related directly and indirectly to the safe navigation of ships, that is, property and life of human beings. Marine geographical names have not been correctly named and used so far as in the case of using the name ‘Sea of Japan’ instead of ‘East Sea’. Marine geographical names have been created arbitrarily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researchers, institutes, and academic societies, which leads to confusion and makes it difficult for those to be acknowledged internatio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uniqueness and technicality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and analyzes the efforts and status for the standardization processes in Korea.

#### 1.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갯벌과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섬과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3,1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과 서, 여 외에도 수많은 암초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부의 섬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표준화된 해양지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명(地名)이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 유산으로 지명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설, 문화, 풍속 등이 들어 있으며 그 지방의 생활상이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명(地名) 제정에 있어서 陸上地

名과 海洋地名을 구분하지 않고 지명 전체를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지명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쳐 제정·고시하여 왔다. 그러나 2002년 7월1일 해양지명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지명(地名)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심의·제정하고 있다.

육상지명은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되어있는 중앙지명위원회(위원장 국토지리정보원장)에서 관장하고, 해양지명은 수로업무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한 해양지명위원회(위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에서 관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관심 밖이었던 해양지명을 중심으로 해양지명이 갖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교수 (choiys@uos.ac.kr)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kshan@nori.go.kr)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과정 (ytlim@nori.go.kr)

해양지명위원회의 발족의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며 해양지명의 제정·고시가 갖는 의미를 지명과 비교하여 앞으로 해양지명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특수성

### 2.1 해양지명의 정의

해양지명 이란 용어의 정의는 수로업무법 제 2조에 “해양지명(海洋地名)”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 및 해구(海溝) 등의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현재 불려지고 있는 해양지명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海洋(ocean, sea) : 지구상의 해역을 가장 크게 구분한 바다(태평양, 대서양, 동해, 황해, 동중국해 등)
- 海峽(strait) : 육지사이에 끼여 있는 좁고 긴 바다(대한해협, 제주해협 등)
- 灣(gulf, bay) : 육지로 깊게 들어간 바다(경기만, 진해만 등)
- 浦(inlet) : 만보다 작은 바다(만리포, 용암포 등)
- 水路(channel) : 배가 통항할 수 있는 좁고 긴 바다(명량수도, 가덕수도 등)
- 礁(reef) : 선박항해에 위험한 해면 가까이 있는 바위(일향초, 왕돌초 등)
- 堆(bank) : 항해에 위험하지 않는 대륙붕의 얕은 곳(대화퇴, 중앙천퇴 등)
- 海底峽谷(submarine canyon) : 바다밑의 좁고 긴 계곡(원산심해장곡 등)
- 海底盆地(basin) : 평면적으로 보면 다소 등방형 형태의 함몰된 해저지형(울릉분지 등)
- 海底山(seamount) : 해저에서 1,000m 이상의 높이로 산과 같이 형성된 지형(볼타해산 등)
- 海底山脈(ocean range) : 해저산이 산맥과 같이 형성된 지형(코차브해저산맥 등)
- 海嶺(ocean ridge) : 해저산맥이 아주 길게 형성된 지형(대서양중앙해령 등)
- 海溝(trench) : 해저의 깊고 좁은 계곡 지형(마리아나 해구 등)

위에서 열거한 해양지명의 정의는 국제수로기구(IHO) Hydrographic Dictionary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해양관련학과에서 기술

하고 있는 내용과,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와 일본의 해양관련 서적에서 별췌한 것으로 우리나라 해양지명 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명칭에 대한 표준 편람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연안항로지와 해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다.

위에서 예를 든 해양지명 외에도 마을 주민이나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종류와 숫자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공식 간행물에 표기되어 있는 해양지명의 사전적, 법적인 표준 편람이 제정되지 않아 육상지명과 해양지명의 분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2.2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특수성

해양지명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선박의 항해안전과 직결되는 위험물을 내포하고 있어 해양지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위치와(경도·위도: 지리적 위치) 범위, 지명에 대한 표준용어의 선택이다. 지명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위험의 여부를 당사자가 스스로 알 수 있어 근본적으로 해양지명이 갖는 전문성 및 특수성과는 구별이 된다. 예를 들어 육지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를 향하고 있을 때 도로 위에서 공사 중인 안내판을 보거나 또는 안내판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공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한 다른 길을 택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바다는 물로 덮혀 있어 수면하의 현상을 확인하며 항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오직 해도와 레이다에 의지하여 목적지로 항해한다. 이 때 해도에 오류가 있고 해양지명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커다란 해난사고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바다에는 지구 천체의 물리적인 운동에 따른 밀물과 썰물, 조류, 해류 등 자연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멀리 작은 섬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발밑까지 가득 차 있던 바닷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석현상에 의해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 있다. 그 때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암초들이 수면위로 드러나 보인다.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수많은 암(岩)과 초(礁) 하나 까지도 각각의 이름이 있다.

해양지명은 눈에 보이는 섬, 도(島), 서(嶼), 여 뿐만 아니라 바닷물 속에 잠겨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초(礁)와 같이, 해양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사물 하나까지 모든 것이 선박의 항해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물의 속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하여, 물위로 드러나 보이는 섬, 여 등의 지형지물은 최정상의 위치와 크기를, 수중의

암초 등은 가장 얕은 곳의 수심과 범위, 해저구성물질(예를 들면 뼈, 혹은 모래, 암석 등)의 종류, 등심선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군작전을 위해서는 깊은 해저에 있는 해산(海山), 해저분지(海底盆地)의 존재를 파악하여 알려야 하고 항만의 개발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양조석을 고려하여 정확한 해양조사가 이루어야 한다.

해양지명을 제정·고시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항해안전이며 따라서 그 위치와 범위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특수성이다.

### 3. 우리나라 해양지명의 현황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어류, 패류, 해초류 채취 등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과 해양문화와 관련된 것은 관계문헌이나 관계기관<sup>1)</sup>, 대학연구소, 지방문화원 등에서 매우 상세하게 조사·보고하고 있으나, 해안가의 여, 암, 초 등과 해저분지, 해산, 해저산맥, 해령(海嶺) 등 해저지형에 관한 해양지명은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일부 지명의 유래나 전설 등은 연로한 마을 주민들을 통해 구전되고 있다.

그동안 육상지명은 지적정리 등 토지행정 수행과 지방지명위원회의 꾸준한 활동으로 많은 지명이 정비되어 왔지만 해양지명은 인간이 살지 못하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해양에 관한 관심이 적어 한때 공도 정책을 쓰기도 하여 올릉도를 무인도로 비워 두기도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해양지명의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측량하여 그 당시 간행한 해도와 항해관련 서적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52년 1월 당시 해군본부 수로관설(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의 전신)에서는 전쟁 중 해군의 작전지원을 위해 내무부 건설국, 상공부 수산시험관실 및 국립기상대의 도움을 받아 약 4개월에 걸친 현지조사와 실측자료, 각종 보고서 및 문현을 수집하여 800항에 달하는 한국연안수로지 제1권 동안·남안, 제2권 서안·서해제도 편을 간행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한 한국연안의 항해와 해양에 관한 수로지이다. 그러나 내용과 간행 형식면에서는 해양

지명과 육지연안의 지명 모두 일본 해양정보부에서 간행한 조선연안수로지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군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행된 것이었다.

그 후 1961년 12월 서안·서해제도 편을 증보 간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는 해역별로 동해안 항로지, 남해안 항로지, 서해안 항로지를 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로지에 쓰이고 있는 지명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고시한 지명으로 간행하고 있지만 해양지명은 특별히 고시되거나 제정되지 않은 것은 관행대로 과거 일제 때부터 불려오고 있는 해양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002년 7월 1일 발족한 해양지명위원회의 해양지명의 제정·고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차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 2002년 9월 3일 ~ 7일 (5일간), 동해안 경주시, 포항시, 영덕, 울진, 동해시

2차 : 2002년 11월 4일 ~ 10일 (7일간) 남해안 거제시, 통영시, 여수시, 완도군

3차 : 2003년 2월 4일 ~ 9일 (6일간) 남해안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남해군, 사천시, 순천시, 해남읍

4차 : 2003년 8월 25일 ~ 30일 (6일간) 남해안 무안군, 함평읍,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보성군

현지확인 조사 방법은 시·군의 지방 행정기관과 문화원을 중심으로 사료와 문현을 수집하였으며 직접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을 직접 만나서 자료를 채록하였다. 그러나 조사에 응해준 주민들 대다수가 대체로 연로하고 방언이 심한 관계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4차에 걸친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지명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명은 수많은 외침의 역사 속에서 수난을 겪어 왔으며 특히 1910년 일제가 실시한 조선토지조사 사업 아래 지명은 일본의 쇠민통치기준에 따라 왜곡되고 비하되어 왔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일부는 소멸되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의 마을 또는 지역에 대한 지명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명, 행정지명 또는 지도 등에 표기되는 지명이 제각각이어서 시·군·구의 행정 처리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1958년 7월 25일 국방부 일반 명령 제103호로 국방부 지리연구소 내에 중앙지명위원회를 발족시켜 1961년 4월 22일 지명 124,000건을 고시하고 지명 편람을 간행하였다. 그 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지명을 제정·변경·폐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29일 2003년도 제1차 중앙지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 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1 서남해역, 2 서해해역, 3 동남해역, 4동해해역, 5제주해역 2002. 12.

전국문화원협회, 한국의 항토문화자원, 1 서울·인천, 2 경기·강원, 3 대전·충남·충북, 4 광주·전북·전남·제주, 5 대구·경북, 6 부산·울산·경남, 2000. 12

## 4. 국내외 해양지명 관련 조직

### 4.1 외국의 해양지명 위원회

미·일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양지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양지명위원회를 분리 독립된 기구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해저지형도 및 해도에 자국어로 해양지명을 표기하여 간행하고 있다.

#### 1) 미국(Board of Geographical Names)

1890년 미국 내무성 산하에 지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 및 국외 지명에 대한 표준화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내지명위원회(DNC: Domestic Names Committee)와 국외지명위원회(FNC : Foreign Names Committee)를 운영(약250만개 지명 DB완료)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남극지명자문위원회와 해저지형지명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DNC는 미국내의 지명에 관한 표기의 표준화작업을 수행하며 FNC는 미국 외부의 지명에 관한 자료수집 및 표준지명철자법을 개발하고 있다.

#### 2) 일본의 해양지명위원회(설립 ; 1966년)는 해양정보

부를 중심으로 지질조사소, 해양과학기술 센터, 동경대학 해양연구소, 일본수산학회, 일본지질학회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저지명을 결정(1996년 1,212개) 해도, 해저지형도 등에 기입하고 있다.

그 밖에 캐나다는 1897년 수산해양부 주관하에 해양지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 4.2 관련 국제기구

지명 및 해양지명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수로기구 (IHO) :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전 세계의 항해안전에 공헌하기 위해 국가간 수로업무 협력 및 수로업무에 관한 과학 및 기술개발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0년에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1921년 설립된 국제수로국(IHB :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을 정부간 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편하여 설립하였다.

#### 2) IOC/IHO GEBCO해저지명소위원회 (SCUFN : GEBCO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1970년 국제수로기구(IHO) 및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에서 세계해저지형도(GEBCO)에 표기할 해양 및

해저지명을 정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며, 해양의 구역을 정한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 Seas)』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 3) 유엔지명표준화회의 (UNCSGN : 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1965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발족된 유엔기구로 매 5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으로 우리나라 1979년 2월에 가입하였으며, 동 회의의 목적은 지명의 표준화, 로마자표기, 해양지명의 통일과 국제협력 및 지명 교환 등 결의사항 마련에 있으며, 동 회의의 지원기관으로 유엔지명전문가그룹회의를 매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 4.3 우리나라 해양지명위원회

1987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UNCSGN)와 국제수로기구 (IHO)에서는 세계 각국에 책임 있는 지명 기관(해양지명포함)의 설립을 권고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지명 기관의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마저 전무한 상태였다.

1996년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으며 점차 증대되어 가는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지명위원회 발족에 관한 사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8호로 수로업무법을 개정하고, 2002년 5월 27일 동법시행령에 해양지명위원회 발족에 관한 법·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2002년 7월 1일 해양수산부내에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위원 7인과 각 분야의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 7인으로 해양지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해양지명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2002년 7월 12일 개최 전문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해양지명위원회 운영세칙과 해양지명위원회 영문명칭 표기를 Korean Committee on Marine Geographical Names으로 확정하였으며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 까지 독일 베르лин에서 열린 유엔지명전문가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에 해양지명위원회가 발족되었음을 정식으로 보고하였다.

제2차 회의를 2002년 9월 13일 개최하여 강원도 동해시 목호동 목호 등대에서 진북 방향 123° 5.3km 지점에 있는 수심 9.9m의 수중 암초를 “찬물내기초”로 명명하는 등 총 4건의 해양지명을 심의·의결하고 동년 12월 12일자로 정식으로 고시하였다.

## 5. 우리나라의 해양지명 표준화와 개선방안

### 5.1 해양지명 표준화 의의

해양관련기관 및 각종 연구기관, 단체에서는 용어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자료의 발표를 위해 표준화된 해양지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양선진국(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해양지명표준화를 위해 해양지명위원회를 운영, 해양지명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양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해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해양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해저에 있는 지형에 대한 해양지명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양지명을 국제수로기구(IHO)/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에 상정하고, 우리 이름의 해저지형도 및 해도를 간행함으로써 국제적 입지 확보와 여러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을 표준화하여 사용지명을 국가공인 함으로써 관련기관, 연구기관, 관련학계 등 해양지명 사용자의 지명 이용의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다.

해양지명의 표준화는 우리나라 관할 해역 내의 모든 해양지명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표준화하여 국내·외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해양지명을 제정하고, 해양지명 부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 내의 모든 해양지명을 표준화하여, UN지명표준화회의와 국제수로기구(IHO) 해양지명집(Gazetteer)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 5.2 해양지명 표준화 절차 및 방법

수로업무법에 언급되어 있는 해양지명 이외에도 현재 명명되어 사용하고 있는 해양지명은 많다. 현재 사용 중인 해양지명을 중심으로 용어를 수집하여 정의, 어원, 유래, 분포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양지명표준화이다. 따라서 해양지명위원회의 운영방안을 포함한 해양지명 표준화의 기본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 해양지명의 수집

- 현재 우리나라, 외국,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 중인 해양지명에 관한 자료 수집
- 한국연안 수로지, 표준지명관련자료, 고해양지도, 세계백과사전, 국제기구 지명자료 등

#### 2) 자료분류 및 검토

- 지리학, 해양학, 역사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검토
- 일, 중 등 인접국 및 국제기구 등의 관련정보 검토

- 사용 중인 용어의 어원, 유래, 분포 등 해양지명의 체계적 분류.

#### 3) 분석 및 지명정의

- 해양지명 명명의 근거, 법칙, 규모 등 해양지명으로 명명하기 위한 용어의 분석
- 국제수로기구,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등 국제기구의 해양지명표준화 사례 검토
- 해양지명 표준화 기준에 대한 검토
- 유형별 해양지명 표준화 기준 및 항목 검토

#### 4) 전문위원회 검토 및 의견수렴

- 해양지명위원회 전문위원회(지역, 전문영역 등 고려한 구성)의 검토
- 항토사학, 지리, 해양 등 해양지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 5) 해양지명위원회 안건상정

- 공청회를 마친 해양지명을 해양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 6) 확정·고시

-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확정·고시

#### 7) 표준편람 발간

- 확정·고시된 해양지명에 대하여 사진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지명표준편람으로 발간

### 5.3 개선방안

현재 명명되어 있는 여, 서, 초, 암 등 해양지명의 재정립도 중요하지만, 해양관측장비의 발달로 인하여 자세하게 관측되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저지형인 해산, 해구, 해령, 해저협곡, 삼해평원 등에 대한 새로운 해저지명도 제정되어야 한다. 미, 일 등 선진해양국가는 태평양 대서양 등의 해저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차세대의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태평양 C-C (Clarion - Clipperton) 해역에서 심해저의 망간단괴 등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미 보유한 망간단괴 탐사기술을 활용한 망간, 해저열수광상 등 미개척 광물자원 개발을 통하여 해저광물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지명을 조사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사업의 주요 조사내용 중에서 지리정보 조사항목으로 해양지명 조사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해양지명 현지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리고 각 도·시·군에서 간행하는 도지, 시지, 군지 및 각 지역 문화원 등에서 간행하는 각종 지명관련 향토지 등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해양지명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해양지명위원회는 중앙지명위원회와 달리 시·군의 지방지명위원회가 없이 해양지명의 관련 모든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지명위원회는 지역, 전문영역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지명위원회 및 문화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해양지명의 발굴과 해양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인 절차와 국제기준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양지명에 관한 해양지명표준편람 제정, 해양지명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지도 및 해도 등의 표기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의 현황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앞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해양지명의 제정·고시에 필요한 해양지명표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지명을 조사·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해양지명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방지명위원회 및 문화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제정·고시된 해양지명은 해양관련기관, 관련학회 등에서 사용을 적극권장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국가표준해양지명을 사용하여 해양지명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절차와 국제기준에 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양지명에 관한 해양지명표준편람 제정, 해양지명에 관한 국제교류 협력,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국립해양조사원 연안항로지, 동해안 2003. 1, 남해안 2003. 1, 서해안 2000. 12.
2. 국립해양조사원 해도, 동해안(75종), 남해안(58종), 서해안(59종).
3. 국립해양조사원 home page 우리역사와 함께 숨쉬는 동해.
4. 수로업무법증 개정법률 설명자료, 2001.
5.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해양수산부 1999.
6. 해양지명위원회 운영계획 2002. 7.
7. 新訂 海圖の知識, 日本成山堂書店 平成6年(1994).
8. IHO, Hydrographic Dictionary, Monaco 1994.

(접수일 2003. 7. 9, 심사 완료일 2003. 7. 25)